

『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11월 22일

나. 발 의 자 : 박교상, 김인배, 김정곤, 양진오, 정근수(5인)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1월 28일

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박 교 상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(안 제4조)
- 전기자동차 구매자, 충전시설 설치자에 대한 경비지원(안 제5조)
-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, 우선주차구역 설치, 충전시설 설치 등 (안 제6조)
-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(안 제7조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
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영 수

○ 본 「구미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」은

- 에너지 수급난과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고 미래성장 동력으로써의 산업발전과 대기환경을 위한 예방적 측면에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